

아시아연구소 HK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시행 지침

제정 : 2020년 8월 20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의 인문한국 (HK)교원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분야) 모집분야는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 사업위원회에서 입안하고, 아시아연구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제3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단계별 심사항목과 배점은 아래와 같다.

1. 기초 및 전공심사 (1단계)

- 가.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상·중·하]
- 나. 최근 3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30점]
- 다. 총괄연구업적 [30점]

2. 면접심사(2단계)

- 가. 공개발표 [15점]
- 나. 자기소개서와 연구계획서 [15점]
- 다. 임용적합성 [10점]

제4조(연구실적물) ① 연구실적물의 범위, 인정 및 인정점수는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5조의 4를 따르되, 박사학위논문은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②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은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의 200점 이상 300점 이하(통평원 300~400점, 경영대·사회대 100~300점)의 출판된 연구물에 한한다. 제출된 300점 이하의 연구실적물 중 내용평가가 우수한 순서대로 200점 이상이 될 때까지의 연구실적물을 최종 평가대상으로 한다.

③ 지원마감일까지 출판되지 아니한 연구실적물은 저서 및 학술지 발행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게재 완료된 연구실적물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초 및 전공심사) ① 기초 및 전공심사 심사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8명 이상**의 심사위원 후보자 중 소장이 본교 이외의 **학외인사가 2분의 1이상**이 포함된 5명을 지명하여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및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②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심사는 제출된 연구실적물을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고 심사위원별 평균을 낸 후, 심사위원별 평균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하고 3명의 평균이 2.0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2.0미만이면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연구실적물 심사는 심사위원 5명이 각자 그 내용을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 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중 최고 및 최저 등급의 평가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평가를 평균한 것을 평가 점수로 하며, 평가 점수가 4.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인정하고 4.0미만이면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6조(총괄연구업적심사) 총괄연구업적심사는 인사위원회 위원 각자가 응모자가 제출한 총괄연구업적목록 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 두 영역의 배점을 고려하여 30점 만점으로 종합 평가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가 점수로 한다. 다만,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15점(만점의 1/2) 이상일 때에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가 점수로 한다.

1. 연평균 연구업적 및 연구실적물의 질적 수준(15점)
2. 학술활동 및 연구과제 수행 실적(15점)

제7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대상자는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결과 적격자 중 상위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면접심사위원은 HK+메가아시아연구사업단의 일반연구원과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장이 5명 이상을 지명하여 공개발표와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③ 공개발표는 심사위원 각자가 전문성, 의사전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가 점수로 한다.

④ 연구계획서는 심사위원 각자가 응모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연구계획서 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연구 주제 및 방향의 적합성, 연구성과의 확산 및 연구소 발전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가 점수로 한다.

제8조(임용적합성 심사) ① 임용적합성은 인사위원회 위원 각자가 응모자 제출한 제반 서류, 1단계 평가점수, 공개발표와 연구계획서 평가점수 등을 바탕으로 다음 두 영역을 배점을 고려하여 10점 만점으로 종합 평가하여 평균한 점수를 평가 점수로 하며, 평가점수 8.0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한다.

1. 연구자로서의 자질 및 윤리의식(5점)
2. 대학 및 사회기여 가능성(5점)

제9조(임용추천) ① 인사위원회는 신규채용후보자 가운데 총점 80점 이상인 자로서 임용적합성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 추천한다.

② 소장은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교수 임용 및 운영 규정」 제6조 1항에 따라 심사 종료 후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사회과학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시행 세칙」,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교수 임용 및 운영 규정」 및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 관련 운영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2020. 8. 20.)로부터 시행한다.